

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변경 보고

## 1. 개정이유

-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공사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조직의 정식 직제화 및 인력 증원
- 연구용역에서 공공급식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 15명으로 산출되었으나, 서울시 협의 결과 정원 증원 최소화를 위해 8명 증원으로 서울시 통보

## 2. 개정내용

- 사업의 범위 개정(제6조 제1항 10호)

- (현행) 학교급식사업 → (개정) 유치원 및 공공급식사업 포함

현 행	개 정(안)
제6조(사업의 범위)	제6조(사업의 범위)
10. <u>학교급식사업</u> 과 관련된 농수산물 식품의 유통	10. <u>학교급식(유치원 포함) 및 공공급식 사업</u> 과 관련된 농수산물식품의 유통

- 기구표 개정(별표1) : 사업추진 업무에 부합하도록 “단” 명칭 변경

- (현행) 현대화사업단 → (개정) 유통물류혁신단

- 정원표 개정(별표2) : 8명 증원(2급 1명, 3급 이하 7명)

- (현행) 직급별 정원표

계	임원	직원			
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
364	3	361	8	26	327

- (개정) 직급별 정원표 : 8명 증원(2급 1명, 3급 이하 7명)

계	임원	직원			
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
372	3	369	8	27	334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-8028호(2023. 9.15.), 「공공급식 체계 개편 계획」,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-8861호(2023. 10. 11.), 「공공급식 체계 개편 계획」(서울시장 방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 필

라. 절 차 : 이사회 의결 → 서울시의회 보고 → 서울시장 인가 및 공포 시행

마. 참고사항 : 정관 개정(안)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사업의 범위) 제1항 제10호 “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 
식품의 유통”을 “학교급식(유치원 포함) 및 공공급식사업과 관련된  
농수산물식품의 유통”으로 한다.

제23조(조직 및 정원)의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를 별지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로  
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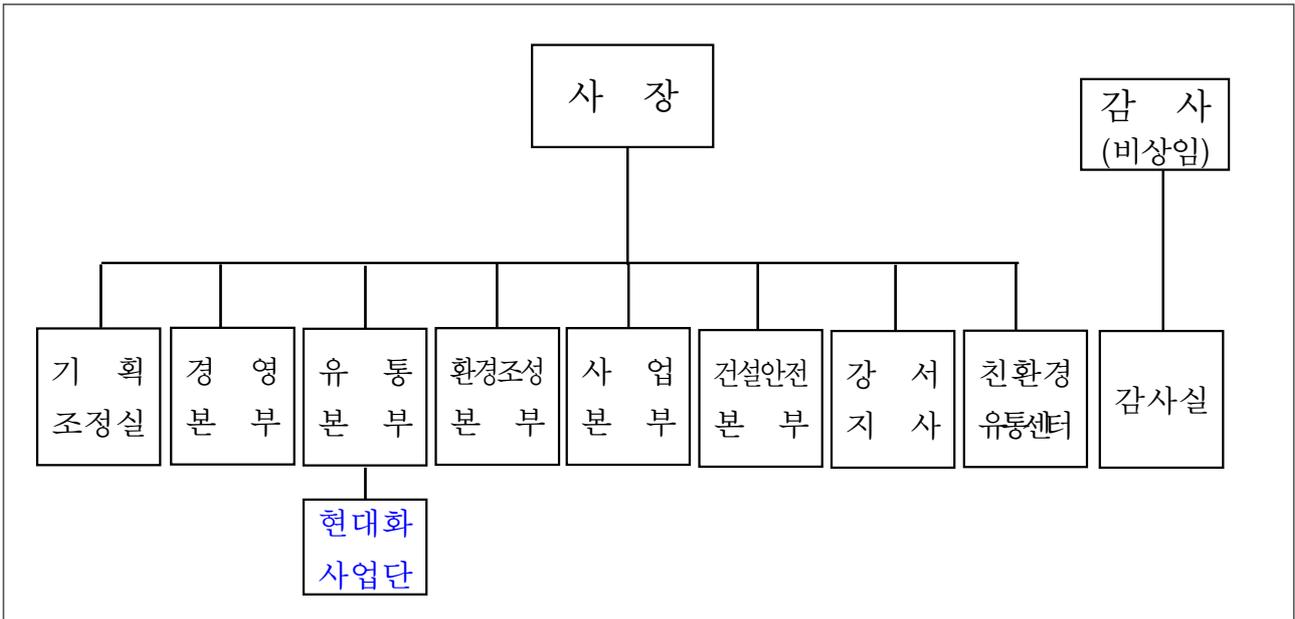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6조(사업의 범위)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~9. (생략)</p> <p>10. <span style="color: red;">학교급식사업</span>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</p> <p>11.~20.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6조(사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span style="color: blue;">학교급식(유치원 포함) 및 공공급식 사업</span>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</p> <p>11.~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3조(조직 및 정원) 공사의 조직은 <span style="color: red;">별표1</span>, 정원은 <span style="color: red;">별표2</span>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23조(조직 및 정원) ----- <span style="color: blue;">별표1</span>, ----- <span style="color: blue;">별표2</span>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[별표 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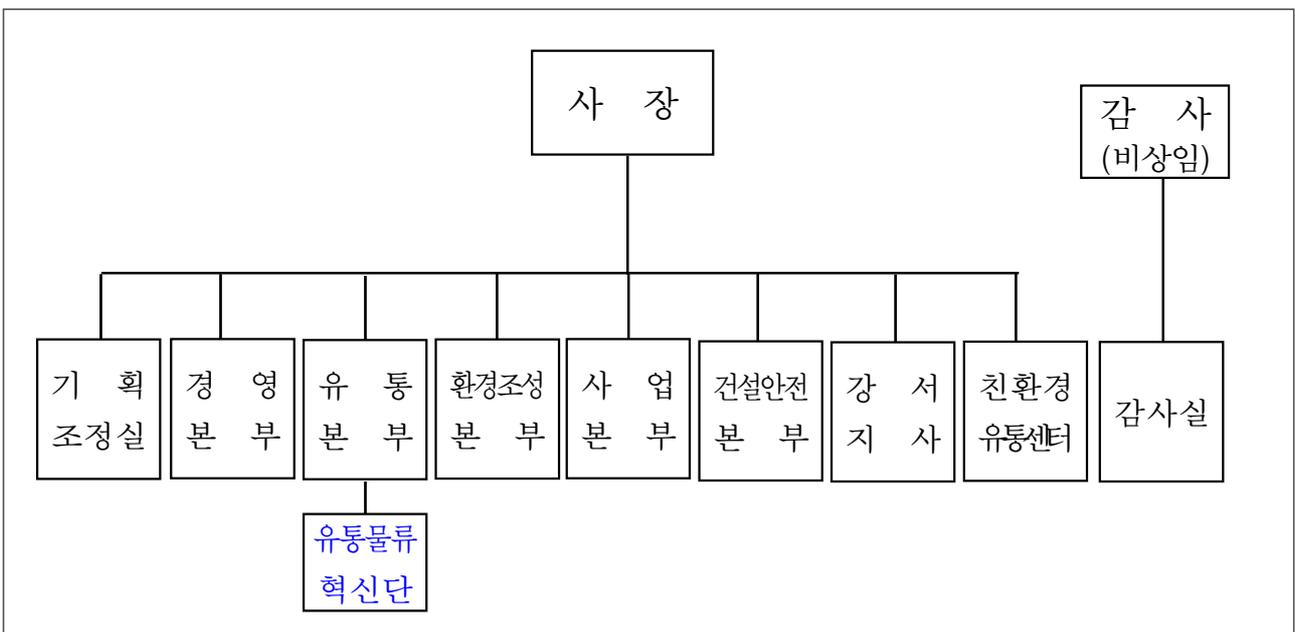
**현행**

기구 표(제23조 관련)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사업단



**개정안**

기구 표(제23조 관련)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단



[별표 2]

**현행**

정원표(제23조 관련)

○ 직급별 정원표

계	임원	직원			
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
364	3	361	8	26	327

※ 비상임이사(감사) 미포함

○ 부서별 정원표  
공사에서 사장 책임하에 적의 배분 시행

**개정안**

정원표(제23조 관련)

○ 직급별 정원표

계	임원	직원			
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
372	3	369	8	27	334

※ 비상임이사(감사) 미포함

○ 부서별 정원표  
공사에서 사장 책임하에 적의 배분 시행